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서

표준약관
제10068호

장기요양기관의 이용자(입소자,수급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계 약 당 사 자				
이용자 (입소자) "갑"	성 명		등 급 (인정번호)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주 소			
	기 타	☐ 일반 ☐ 8%감경대상자 ☐ 12%감경대상자 ☐ 기초생활수급권자		
제공자 "을"	시 설 명	세인트재활요양원	시설종류	노인요양시설
	대 표 자	김 성 숙	연 락 처	032-427-3288
	주 소	인천시 남동구 앵고개로934번길 5 씨티장 6층		
	입금계좌	국민은행 804601-04-323841		
대리인 (보호자) "병"	성 명		관 계	'갑'의 ()
	생년월일		연 락 처	
	주 소			

제1조 【 목 적 】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 ① 계약기간은 202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인정등급, 장기요양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 ⑥ '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3조 【 입소·이용료 납부 】

- ① '갑'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202__년__월__일에 납부하기로 한다.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5일 납부하기로 한다. (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단, 기초수급권자는 국비, 지방보조금으로 대체함으로 일체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다.
- ② '갑' (또는 '병')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 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포함한 이용료를 매월 '을'에게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 ③ '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을'의 예금계좌 또는 카드결재로 한다.
- ④ '갑' 또는 '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 관련 실비는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 시설급여 (1일)

구분		1 등급		2 등급		3~5 등급	
요양급여	노인요양시설	93,070원		86,340원		81,540원	
비급여	식재료비	12,000원	간 식 비	1,000원	상급침실료		
	기타	- 계약의사 진료비 - 이미용료 없음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 상급침실료는 일정기간 부과가 면제 될 수 있다.

◇ 수급자 등급별 월 이용료 요양보호사 2.1:1

□ 월 이용료 (일반 20%)

(단위:원)

등급	본인부담금(일)			식대/간식 (30일 기준)	이용료 합계		
	28일	30일	31일		28일	30일	31일
1등급	521,192	558,420	577,034	390,000	885,192	948,420	980,030
2등급	483,504	518,040	535,308		873,504	908,040	938,000
3등급	456,624	489,240	505,548		820,624	879,240	908,540

□ 월 이용료 (경감 12%)

(단위:원)

등급	본인부담금(일)			식대/간식 (30일 기준)	이용료 합계		
	28일	30일	31일		28일	30일	31일
1등급	312,715	335,052	346,220	390,000	676,710	725,050	749,220
2등급	290,102	310,824	321,185		680,100	700,820	724,180
3등급	273,974	293,544	303,329		637,970	683,540	706,320

□ 월 이용료 (경감 8%)

(단위:원)

등급	본인부담금(일)			식대/간식 (30일 기준)	이용료 합계		
	28일	30일	31일		28일	30일	31일
1등급	208,477	223,368	230,814	390,000	572,470	613,360	633,810
2등급	193,402	207,216	214,123		557,400	597,210	617,120
3등급	182,650	195,696	202,219		546,650	585,690	605,210

◇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1. 비 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 상급침실 이용료

①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②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 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나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제4조 【 계약자 의무 】

‘갑’과 ‘을’ 그리고 ‘병’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갑’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 내에서 개인 소유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지 의무
5.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6. 기타 시설 이용 규칙 이행 의무

② ‘을’의 의무

1. 안전한 시설 및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2.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
3.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에 의한 성실한 서비스 제공 의무

③ ‘병’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등 필요한 정보와 자료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지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5. 입소자의 병원 진료 또는 입원시 간호,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일체에 대한 책임 의무

제5조 【 계약해지 요건 】

① ‘갑’의 해지

1. '갑'과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 해지시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의 해지

1.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시설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다른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4. 배회 또는 폭력성 등이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다른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6.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때

제6조 【 퇴소 】

- ① '을'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갑'과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 '병'(또는 '갑')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③ '을'은 '갑'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한(또는 '병')계좌로 지체없이 지급한다

제7조 【 입소물품 】

'갑'은 시설입소 시 개인물품을 '을'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제8조 【 면회 및 외출·외박 】

- ① '갑'의 면회시간은 매일 09:00시부터 20:00까지로 한다. (단 계약당사자 협의에 의해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 ② '갑'은 외출·외박 시 사전에 '을'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을'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갑'이나 '병'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 ④ 외출·외박 중 '갑'에게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갑' 또는 '병'은 '을'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 【 시설관리 】

- ① '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을'은 시설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제10조 【 건강관리 】

-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갑'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을'은 '갑'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의사의 진료 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외부간병인 등)는 '갑' 또는 '병'에게 별도 징수한다.
- ④ '을'은 입소 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갑'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⑤ '을'은 갑의 건강을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 ⑥ '을'은 '갑'이 의사에게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이상 시 지체 없이 '병'에게 통보한다. '갑'이 계약의사의 진료를 받을 경우 '갑' 또는 '병'은 진료비 20%를 '을'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⑦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1조 【 시설물 배상 】

- ① '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②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 위급 시 조치 】

-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갑'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을'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 '병'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 '을'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④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 '을'은 '갑'의 입소 입소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 '병'과 정산할 수 있다.

제13조 【 임종 및 장례 】

입소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

-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2. 장례는 '병'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 ② 무연고자
 -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을'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 2.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 3. 1개월 이내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제14조 【 식사 및 간식 】

- ① '을'은 1일 3식 및 간식을 '갑'에게 제공하며, '갑'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 특별식(경관급식비 등)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와 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갑'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 ② '을'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갑'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 【 영양실의 배정 】

- ① '갑'의 영양실(생활방) 배정은 입소 순서에 따른다.
- ② 입소 후 '갑'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갑' 또는 '병'의 의견을 반영하여 '을'이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 개인정보 보호의무 】

- ①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 ③ '갑'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으로 한다.
- ④ '갑'은 '을'이 수집·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 【 기록 및 공개 】

입소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입소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 배상책임 】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을'은 '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직원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시설 직원 등에 의한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갑'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갑'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갑'이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9조 【 이용계약서의 해석 】

-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기로 한다.

202 년 월 일

계 약 자	"갑"	이용자 (입소자)		인
	"을"	시설 대표	세인트재활요양원 대표 김성숙	인
	"병"	대리인 (보호자)		인

표준약관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계약서 부분과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 및 폭력에 관한 예방 및 대응지침을 제공받았음을 확인함.	서명
--	----

우리 시설은 어르신의 권익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해 드리며 어떤 이유로든 금품이나 사례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종사자로부터 이런 요구가 있을 경우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설은 본인 부담금의 면제, 할인 그리고 수급자 빼내오기 등의 불공정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